

【 소방법령Ⅲ 】

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층건물, 복합용도 건축물의 기준은 제외한다)

- ①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②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③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 ④ 제5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 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로 옳은 것은?

- ①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③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지하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 ④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대상물과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의 연결로 옳은 것은?

- ① 전기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② 제3류 위험물 —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③ 제4류 위험물 — 옥내소화전설비
- ④ 제5류 위험물 —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조소: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② 옥외탱크저장소: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③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의 위치를 같은 사업장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 ④ 주유취급소: 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

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도지사의 권한 중 소방서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 ② 예방규정의 수리·반려 및 변경명령
- ③ 군사목적에 위한 제조소등의 설치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 ④ 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 ②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 ③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 ④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일반음식점 또는 전시장

7.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등유 150,000리터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정기점검 대상이다.

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의 연결이 옳은 것은?

	품명	지정수량(kg)
①	나트륨, 황린, 적린	10
②	브롬산염류, 중크롬산염류, 철분	500
③	질산염류, 금속의 인화물, 과산화수소	300
④	무기과산화물, 유기금속화합물, 황화린	50

【 소방법령Ⅲ 】

9.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 ②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화기주의” 및 “충격주의”
- ③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화기주의” 및 “공기 접촉엄금”
- ④ 제5류 위험물: “화기엄금”, “충격주의” 및 “물기엄금”

1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송 시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염소산, 질산
- ② 적린, 마그네슘
- ③ 염소산염류, 질산염류
- ④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1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품명 및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②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아연분·주석분 및 53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③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 질산은 그 비중이 1.49 미만인 것을 말한다.
- ④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3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예외 조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저장소 일반취급소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가)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나)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 소화기등을 각각 (다)개 이상 설치할 것

	가	나	다
① 옥내소화전설비	1/2	1	
② 옥내소화전설비	1/5	2	
③ 대형수동식소화기	1/2	2	
④ 대형수동식소화기	1/5	1	

1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②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③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④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추는 것

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방탈출카페업
- ② 키즈카페업
- ③ 콜라텍업
- ④ 고시원업

【 소방법령Ⅲ 】

1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육대상자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수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수시 교육 및 보수 교육 대상자에게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개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반행위	횟수	과태료 금액
①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1회	100만원
②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1회	200만원
③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회	200만원
④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100만원

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자
- ② 사무소의 소재지
- ③ 기술인력 보유현황
- ④ 장비 보유현황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 ②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 ③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 ④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1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다중이용업의 허가관청이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영업주의 주소
- ② 영업주의 연락처
- ③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
- ④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면적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영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상 1층에 설치된 밀폐구조의 영업장
- ② 지상 1층에 설치된 실내권총사격장의 영업장
- ③ 지상 1층에 설치된 산후조리원의 영업장
- ④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계획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소방법령Ⅲ 】

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은?

- ①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수용인원 90명인 학원
- ②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 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용인원 100명인 목욕장업
- ③ 가상체험 체육시설업(다만,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
- ④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 ② 안전관리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는 보험요율 차등 적용의 고려 대상이다.
- ③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는 2종(금색, 은색)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다.
- ④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으로는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은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이 된다.
- ④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2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에 있어서 피난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종류에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가 있다.
- ②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 ③ 피난유도선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④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